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전략사령부 업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0312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2. 21. 시행)됨에 따라 지뢰의 탐지·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군인재해보상 관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전공사상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국방부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,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“2025년 2월 28일”을 “2026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4월 30일”을 “2026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68”을 “67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0”을 “66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38”을 “641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 중 “2025년 2월 28일”을 “2026년 2월 28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중 “2025년 4월 30일”을 “2026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군인권개선추진단장)	제29조의2(군인권개선추진단장)
① 차관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 의3제1항제1호에 따라 <u>2025년 2</u> <u>월 28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 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 다.	①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2</u> <u>월 28일</u> ----- ----- --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3(방위산업수출기획과)	제29조의3(방위산업수출기획과)
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「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<u>2025년 4월 30일까지</u>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 출기획과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 <u>2026년 4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제2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68</u>	<u>671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60</u>	<u>663</u>	+3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38</u>	<u>641</u>	+3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